

대출상품설명서

본인은 SBI저축은행과 대출 거래에 있어 저축은행 직원과 상담하여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 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 부담 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채무자(본인) _____ (서명/인)

- ※ 이 설명서는 고객께서 받으신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대출거래약정은 여신거래기본약관과 그 부속약정서에 의해서도 적용을 받으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 서류를 이메일로 제공합니다.**
-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를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가계대출은 가계가 생계유지 등 기타 사용목적으로 받는 대출상품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의 상품이 있습니다.
- **신용대출**은 고객님의 소득 등에 따라 평가되는 개인 신용도에 기반하여 대출한도 및 금리가 산정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담보대출과 비교하여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니나 일반적으로 **금리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아 동일한 금액을 신용대출로 이용하는 경우 이자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민원·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Q1. 대출을 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대출상품별로 심사기준이 상이하므로, 대출상품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79대출, 중금리신용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사잇돌2는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하며, 비상금대출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동인증서를 통해 자동서류제출이 가능하며, **FAX로 제출시에는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2. 전화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A. **APP을 통해서만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외부신용정보상 이상금융거래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상담원을 통한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대출 거절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신청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고객님의 신용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후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당행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대출이 거절되었더라도, 추후 고객님의 신용상태가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면 대출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가능여부는 대출한도조회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Q4. 마이너스통장 연장이 가능한가요?

A. 마이너스통장 대출(만기일시상환 방식)은 만기 1개월전부터 대출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 변동 등으로 대출한도가 감액되는 경우 대출 원금의 일부를 상환 요청할 수 있으며, 연장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대출 잔액과 미납 이자 전부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 대출금 연체 시 대출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연체정보 등록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본 상품설명서의 [14. 연체에 따른 불이익]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saidabank.co.kr>) 또는 고객센터(02-1644-52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성

상품과목	<input type="checkbox"/> 종합통장대출 <input type="checkbox"/> 일반자금대출	상품명	
대출신청금액		총 원리금/수수료 부담예상액*	(최대) 원
대출개시일	년 월 일	대출기간만료일	년 월 일
적용금리	연 % (고정금리)	채권보전	<input type="checkbox"/> 신용(보증, 무보증) <input type="checkbox"/> 기타 ()
대출상환방법	<input type="checkbox"/> 만기일시상환 <input type="checkbox"/> 원금균등분할상환 <input type="checkbox"/> 원리금균등분할상환 <input type="checkbox"/> 만기일시상환 (대출한도거래용: 대출한도내에서 자유로이 상환하고 대출기간 종료일에 대출잔액 상환)		
연체이율	적용금리 + 3%p	중도상환수수료	
연계·제휴서비스 제공여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별지 참조)		

※ 만기 시까지 정상적으로 상환(납입)한 것을 가정한 것이며, 금리변동 및 연체 등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세부사항은 하단의 "4.수수료 등 비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거래 구분

- **개별 거래** : 약정 금액 범위 내에서 일괄(또는 분할)하여 대출이 발생하고 상환한 금액을 재사용할 수 없는 방식
- **한도 거래** : 약정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동일 과목의 대출을 자유롭게 재사용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한도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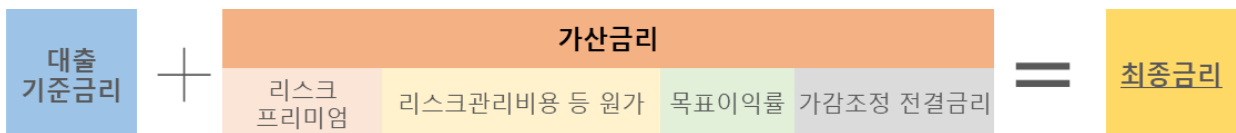
3. 대출 이자율

- 대출금리 산정방식은 크게 고정금리, 변동금리 및 혼합금리 방식으로 구분되며, 고객님의 신청하신 상품은 고정금리 방식의 상품입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	혼합금리
운용형태			
특징	대출 실행 시 결정된 금리가 대출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일정주기(3/6/9개월 등)마다 대출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	고정금리 방식과 변동금리 방식이 결합된 형태
장점	시장금리 상승기에 금리 인상이 없음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부담 경감 가능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중간적 형태로써 금융소비자의 자금 계획에 맞춘 운용 가능
단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금리 인하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 부담이 증가	

■ 대출금리 결정(변동)

- 요인대출금리는 저축은행의 자금조달금리에 각종 원가요소와 목표이익률(마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되며, 변동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표시됩니다.



- 결정된 대출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 거래실적에 따른 부수거래감면금리 등)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한연장, 채무자변경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시점의 원가요소와 마진 및 가감조정 전결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수수료 등 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다만,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동일 은행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 등을 상환받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경과한 후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산식

- 기한전상환대출금액 x ()%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 기한전상환수수료율은 2% 이내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년 까지 적용합니다

■ 인지세 : _____ 원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고객과 저축은행이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15만원	35만원
고객부담	-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회사부담	-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 기타수수료 : 항목 () 금액 ()원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은 고객과 저축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저축은행이 부담한 근저당권설정비용과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보증료 또는 보험료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반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부담**한 한도약정수수료,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등은 저축은행이 반환합니다.

5.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원리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경우

1.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 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3.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해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 이익 상실일 다음 영업일부터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연체이자율

■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 + 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합니다.

※ 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은 최대 연 3%이며, 연체기간별로 연체가산이자율을 차등하거나 단일이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로 합니다.

■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①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②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③ 「분할상환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④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될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⑤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또는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일중

최고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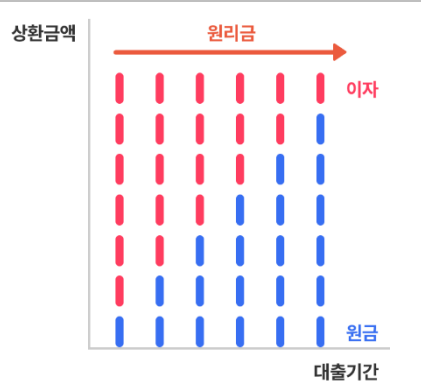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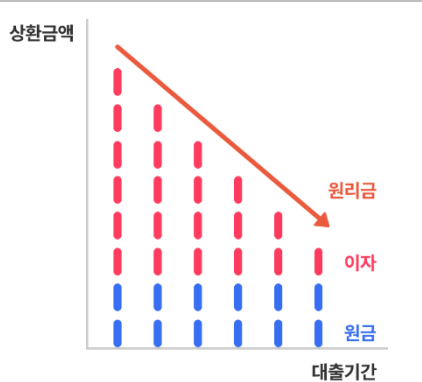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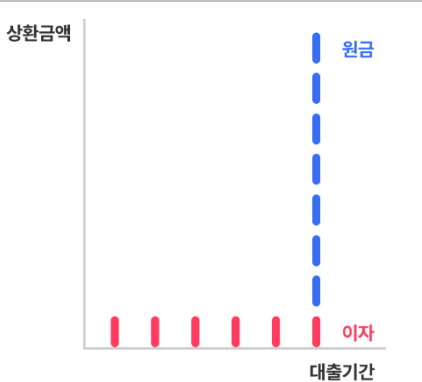
※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 일부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 납부금액 예시 (원금 4,800만원에 대해 연체이자율 10%로 1개월 연체한 경우)

- 원금 4,800만원에 1개월 이상 연체시 연체이자율(예 : 10%) 적용 시 월 연체이자 40만원 (4,800만원X10%X1/12)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7. 대출 상환방법

■ 상환방법별 특징

원리금 균등상환	원금 균등상환	만기 일시상환
 <p>상환금액</p> <p>원리금</p> <p>이자</p> <p>원금</p> <p>대출기간</p>	 <p>상환금액</p> <p>원리금</p> <p>이자</p> <p>원금</p> <p>대출기간</p>	 <p>상환금액</p> <p>원금</p> <p>이자</p> <p>대출기간</p>
<p>대출원금과 이자의 합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p>	<p>대출원금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나가는 방식</p>	<p>약정기간동안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 없이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총 상환 금액이 동일하며 이중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비중이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 • 원금을 바로 갚아나가는 즉시 분할상환 방식과 일정기간 이자만 납부 후 원금을 갚아나가는 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은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가 계산되어, 매월 납입하시는 상환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 원금을 바로 갚아나가는 즉시 분할상환 방식과 일정기간 이자만 납부 후 원금을 갚아나가는 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일자에 대출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대출 상환방법은 여신거래약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 동일한 금리·한도로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부담해야하는 총 원리금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별 원리금 부담액 예시(1억원을 대출기간 5년으로 하여 연 5%로 대출받은 경우)

※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납부 원리금은 금리적용방식, 상환주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리금 균등상환을 선택한 경우

대출기간	원금	이자	상환금액	대출잔액
1년	1,810만원	500만원	2,310만원	8,190만원
2년	1,900만원	410만원	2,310만원	6,290만원
3년	1,995만원	315만원	2,310만원	4,295만원
4년	2,095만원	215만원	2,310만원	2,200만원
5년	2,200만원	110만원	2,310만원	0원
합 계	1억원	1,550만원	1.155억원	-

• 원금 균등상환을 선택한 경우

대출기간	원금	이자	상환금액	대출잔액
1년	2,000만원	500만원	2,500만원	8,000만원
2년	2,000만원	400만원	2,400만원	6,000만원
3년	2,000만원	300만원	2,300만원	4,000만원
4년	2,000만원	200만원	2,200만원	2,000만원
5년	2,000만원	100만원	2,100만원	0원
합 계	1억원	1,500만원	1.15억원	-

• 만기 일시상환을 선택한 경우

대출기간	원금	이자	상환금액	대출잔액
1년	0원	500만원	500만원	1억원
2년	0원	500만원	500만원	1억원
3년	0원	500만원	500만원	1억원
4년	0원	500만원	500만원	1억원
5년	1억원	500만원	1.05억원	0원
합 계	1억원	2,500만원	1.25억원	-

■ 상환방법별 원리금 상환 부담

- 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상환부담 : 동일한 금리·한도로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부담해야하는 총 원리금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이자 납입방법

- 고객님의께서는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매분기/매년)마다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이자 납입방법이 자동이체인 경우, 이자 납입일(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대출원리금 등의 납입일)에 잔고부족 등의 이체불가 사유로 납입금액 전부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지정일 이후 저축은행이 정하는 출금일에 미납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출금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종합통장대출의 경우,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납입하여야 하며, 대출한도가 설정된 입출금계좌에 결산일까지 이자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대출이자(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한도가 부여된 입출금계좌에서 자동출금되며, 예금잔액이 부족한 경우 대출한도 내에서 출금됩니다.

9.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기한의이익 상실 사유)

※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1. 채무자인 고객님의 예금,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 으로부터의 (가)압류명령 등이 있을 때 등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사유)
 - 저축은행으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
 - 저축은행의 서면청구에 의해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 즉시 상환
- 연체이자 부담
-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

10.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 2)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상기의 설명을 확인하였습니다. □)

11. 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에 대한 상기의 설명을 확인하였습니다. □)

12.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 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 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 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상기의 설명을 확인하였습니다. □)

13.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14. 연체에 따른 불이익

- 대출 원리금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한 경우 **단기** 연체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어 금융거래 제한(신용카드 정지 등)받을 수 있고, 개인신용 점수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기연체정보 등록 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어도 개인신용 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연체정보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 예시

-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 : 5/10
- 연체발생일 : 5/11 ◎ 등록사유발생일 : 8/11

- **장기** 연체정보가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대출 신규 및 연장 제한, 신용점수 하락 등)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

-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차주가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에 대하여 원금부터 상환을 원하시는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변경신청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상환 → (변경신청후) 비용, 원금, 이자 순서로 상환
-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이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재변경하는 것은 저축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연체된 금액(이자 및 원금)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부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재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16. 대출거절사유 고지신청서

Q. 대출신청에 따른 저축은행 심사 결과 불승인시 그 사유를 고지 받으시겠습니까? (다만, 「신용정보법」(연체, 부도, 개인회생 등) 이외의 사항으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고지하지 않습니다.

신청 신청하지 않음

17. 대학생 · 청년층 확인서

Q. 본인은 귀 저축은행과의 대출 계약 체결 이전에 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학생·청년층을 위한 공적 지원제도 안내문을 교부받고,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았으며, FINE 등 금리비교공시 사이트에 대해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귀 저축은행과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설명받았음 설명받지 않았음

18. 채무조정 지원

- 채무자는 저축은행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내부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 여부, 채무조정 방법(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 구체적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절차, 효력 등은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기타 유의사항

- 계약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 대출금 상환을 위한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너무 길면 불필요한 이자비용 및 중도상환 시 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연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계약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대출기간 중 대출금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경우(한도대출), 대출계약 연장 시 **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의 경우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
 -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대출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또는 형태)의 신용공여는 여타 금융권역 또는 일반적인 형태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가계대출의 경우 고객은 휴일에도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후 신청금액, 설정금액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상담지점명 : 사이다뱅크팀 담당직원명 : 사이다뱅크팀 연락처: 1644-5277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644-5277)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idabank.co.kr)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저축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용어 설명

용 어	내 용
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강제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권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화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담보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금전화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근저당권, 근질권 등을 의미합니다.
근저당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채권자가 매각(경매)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부동산인 경우 활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을 하더라도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점유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매각(경매)하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근질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양도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의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목적으로 설정자(담보물 소유자) 소유 담보물을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일 내 채무를 이행하면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채권자가 소유하게 됩니다.
담보신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자(소유자)가 소유 재산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수탁자(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담보대출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일 내 채무를 이행하면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공매)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합니다.
대위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행위로서 대신 변제해준 제3자(대위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기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합니다.
채무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기존 채무자(구채무자)로부터 제3자(신채무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매수인)에게 매각하면서 해당 담보대출도 제3자(매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채권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권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채권을 기존 채권자(구채권자)로부터 제3자(신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인 채무자가 임대인(구채권자)에게 갖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저축은행(신채권자)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담보인정비율 (LTV, Loan-To-Va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담보인정비율 기준은 금융당국 또는 저축은행의 내규에서 담보물 종류별로 정하고 있으며 대출가능금액 산정 시 활용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 (DTI, Debt-To-Inc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기타부채는 연간 이자 상환액으로 계산 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은 금융당국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정지역(투기지역 등)에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Debt-Service-Rat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은 금융당국에서 정하고 있으며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 산출합니다.
전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후 전세기간 중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신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등), 신용거래정보(대출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연체정보 등), 신용능력정보(채무정보 등), 공공정보(체납정보 등)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신용평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도를 1점부터 1000점까지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기준으로 신용평점을 활용합니다.
대출 기준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동금리대출의 대출금리 변동 시 기준이 되는 금리 등을 의미하며, 저축은행은 COFIX, 금융채, CD 금리 등 공표되는 금리를 대출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산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축은행이 대출취급에 따른 원가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출 기준금리에 자율적으로 가산하는 금리를 말하며, 아래 등과 같이 구성됩니다.
리스크 프리미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축은행의 실제 자금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의 차이 등을 말합니다.

원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의 신용도·담보종류에 따른 예상 손실비용, 업무원가(인건비·전산처리 비용), 세금(교육세 등) 및 준조세성 부담금(보증기관 출연료 등) 등을 말합니다.
목표이익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은행이 설정하는 수익률입니다.
가감조정 전결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수거래(급여통장 개설·카드실적·수신실적 등) 감면금리, 전결 조정 금리 등을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의 내용에 기한이 존재함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한 대출기한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이 존재합니다. • 다만,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무자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